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한 의 사 전 문 의 의 수 련 및 자 격
인 정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및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련 공백 인정 등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항, 제4항 신설)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3개월)을 의무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고,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2개월 이내)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한 상한(4개월 이내)을 명시하는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함.

나. 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현행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 의사 전문 의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한 의사 전문 의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일반수련의 수련기간은 10개월로,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은 2년 10개월”을 “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3. 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한방전공의가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

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련기간) 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련의 수련기간은 10개월로,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은 2년 10개월로 한다.	제5조(수련기간) ① ----- ----- ----- ----- ----- <u>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u> ----- -----.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u>경우</u>	1. ----- ----- ----- ----- <u>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u>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u>경우</u>	2. ----- ----- ----- ----- <u>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u>
<신 설>	3. <u>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u>

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생략)

제14조(검직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한방전공의가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
-- 제1항제1호 및 제2호-----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

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74